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. 12. 11 선고 2018가단189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변론 종결 2018. 11. 20

판결 선고 2018. 12. 11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에 비치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강릉시 G 지번의 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, 2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H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강릉시 G에 등재된건축물대장을 말소하며, 강릉시 G I호로 등재된 건물의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하라, 예비적으로,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G I호로 등재된 건물의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f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이 강릉시 J(도로명 주소 : 강릉시 H) 지상에 건축되어 있음에도 건축물대장에는 그 지번이 원고 소유인 강릉시 어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, 이 사건 건물을 망 KC2018. 1. 7.사망)이 소유하다가 피고들이 상속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내지 5호증(일부 가지번호 생략)의 각 기재와 갑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,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내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말소 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.

다만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을 정정하는 신청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(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다206075판결 참조), 원고의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의 지번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,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며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()1조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규영

별지